

사회공헌 지침

2023.01.01

(주) 선우시스

제 1 장 총칙

제 1 조(목적) 지역사회에 진정성 있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(주)선우시스(이하 “회사”)의 역량을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용어의 정의) 「사회공헌활동」이란 회사가 사회에 갖는 책임활동의 한 형태로서 재정적 지원(현금 기부)과 비재정적 지원(현물기부, 자원봉사활동, 재능기부활동 등) 등 다양한 회사의 자산과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을 말한다.

제 3 조(구성원의 참여 및 회사의 지원)

1.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의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회사는 임직원의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2. 임직원은 자발적인 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.
3. 회사는 구성원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추진한다.

제 4 조(사회공헌활동의 시기 및 내용)

1. 사회공헌활동은 정기 및 수시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 - ① 정기 사회공헌활동은 유관기관과의 합동 사회공헌활동을 포함하여 상반기 및 하반기에 각 1 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② 수시 사회공헌활동은 유관기관과의 합동 사회공헌활동을 포함하여 연중 상시 실시할 수 있다.
2. 사회공헌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① 재능기부 활동
 - ② 소외계층지원 활동
 - ③ 나눔,상생 활동
 - ④ 환경보전 활동
 - ⑤ 자율참여 활동

제 5 조(전담부서의 지정 및 운영)

사회공헌활동의 전담부서는 경영지원부로 지정하고 구성원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